

#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637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2. 9. 2.

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
## 1. 폐지이유

민선7기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「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### 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2. 8. 10. ~ 8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대상 아님

4) 부패영향평가 : 평가대상 아님

5) 갑질영향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6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붙임

대구광역시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#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 요인 : 해당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함

## 3. 미첨부 사유

이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

4.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대영